

2022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제안’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지역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사)경기시민연구소 올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615경기본부

자료순서

[핵심과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7
■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운영 및 협치체계 구현	14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	16
■ 사회적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노력	20
■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	24

[분야별 과제]

■ 인권

1.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33
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34
3.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35
4. 경기도 학대대응기관 학대 및 학대 대응 부서통합 운영	37

■ 안전

1.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41
2.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41
3. 경기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대	43

■ 돌봄 · 사회복지

1. 취약계층 미디어 돌보미 지원사업	46
2. 경기도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대	47
3.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경기도	48
4.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 수립	48

■ 일자리 · 경제

1. 경기도민의 성평등한 워라밸을 위한 고용정보공개 제안	52
2. 취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 경기도 플랫폼 확대	52
3.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 가사법 조기정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53
4.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프로그램	54
5.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59

■ 사회혁신

1.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63
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65
3. 경기도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66

■ 평화 · 통일

1. 경기도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외	69
2. 경기도 교육청의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외	71
3. 경기도 여성 중심의 한반도 평화 실현	72

■ 문화

1. 문화 협치 플랫폼[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구축	74
2. 예술인 기본소득	75
3. 경기도 문화예산 3% 확보	75

■ 기후위기

1.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 자원순환 에너지화 정책	77
2.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80
3.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82

■ 교육

1. 2022 경기교육정책 제안	83
2. 학교교사 성평등교육 의무화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87
3. 돈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가는 경기도	89

* 의제제안단체

: 경기민예총/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연구소울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다산인권센터/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615경기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YWCA경기지역협의회

[핵심과제]

정책과제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1.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 확진자 중 많은 수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점에 도달하면 독감처럼 관리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증가하는 감염환자 수에 비례하여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확진자 증가 숫자와 급격해지는 확산 상황을 제어하기에 병상 부족 등 공공의료 시스템은 미흡하고 정부의 대응 또한 마찬가지이다. 급격한 확산세에 병원을 구하지 못한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출산을 하고,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노약자의 사례, 재택 치료 중 사망한 영유아의 사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감염 역시 취약한 공간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지 못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되었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 바이러스가 가져온 영향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왔고, 회복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등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하는 정책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더욱 지원이 필요했던 취약한 도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다.¹⁾ 2020년 6월에는 재난기본소득 차등 지원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²⁾ 지원 대책 뿐 아니라 방역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도 있었다.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주거와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검사 대상으로 지목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 이 역시도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이라는 권고가 있었다. 공중보건 위기와 재난 상황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와는 상반된 정책들이 펼쳐졌다.³⁾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인 해외의 사례와도 정

1) [사설] 취약계층 지원예산 삭감, 이재명 판단인가. 인천일보. 2020.9.3.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329>

2)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연합뉴스. 202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76500004>

3)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2020.4.23.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7007&searchcategory=%EA%B8%B0%ED%83%80&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5532>

반대인 상황이다.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로 인해 갑작스레 거주지에서 쫓겨나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와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 실직, 임대료 체납 등으로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 도민이 증가하고 있다. 노숙인, 이주노동자,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재택 치료나 자가격리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정책인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는 적정한 주거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도민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다. 누가 더 피해를 보는가, 누가 더 취약한가, 특별한 보호의 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준에 감염병 예방법이나 재난안전 관련 법률과 조례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차별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 마련,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인간 존엄과 인권을 바탕으로 대응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권의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 역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부재

한국 사회는 국적, 신분, 생활환경,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경제 취약계층 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⁵⁾ 건강보험가입통계에 조차 들어 가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위험에 처했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재난에 대한 지원도 소외된 계층에게는 차별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이주민이 그렇고, 주거 지역이 일정한 이들을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는 노숙인에게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오랫동안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 시켰다. 다양한 재난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는 부실한 상황이다.

4) 이민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 (미국 일리노이주). 서울연구원. 2020.6.3.
<https://www.si.re.kr/node/63527>

5) 경제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 사망률 높아. 메디컬 투데이. 2020.12.2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0186>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이라 명명하고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정한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개선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2020년 9월 말 현재 광역 지자체 10개, 기초 지자체 9개로 조사된다. 경기도에도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내용은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다. 법과 조례 등 제도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역시도 그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사회적 효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한 양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

반면 해외 사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의는 폭넓다. 유럽질병통제센터(ECDC)의 med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people who need extra precautions,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Vulnerable population and COVID-19 등이다. ECDC는 취약계층을 의학적으로 취약한 그룹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으로 나눠, 취약계층별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구분하고 있다. ECDC의 취약계층에는 ‘소수민족, 비정기이주자, LGBTI 커뮤니티, 노인,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인구, 노숙인, 학대받는 가정환경에 사는 사람들,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 장애인, 성노동자’ 등이 있다. CDC는 ‘Increased risk for severe illness’(고위험군인구), Extra Precautions(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종 및 소수민족, 장애인, 빨달·행동장애가 있는 사람, 흄리스, 임신 혹은 수유기의 여성, 요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의 사람들, 새롭게 정착한 난민집단, 약물을 사용하거나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노인,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 면역시스템과 관련하여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등 다양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의 경우 감염병과 관련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인 반면, 우리 법제에서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거나 포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한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특별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

이다.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해 지자체 특성과 현황에 따른 계획과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2) 주거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구분	의료적인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ED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65세 이상)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비만, 당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숙자*, 학대받는 가정환경 내 거주자, 소수민족, 성노동자, 성소수자, 불법이민자 등
C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reased risk for severe ill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특정 의료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암, 만성신장질환, 천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extra preca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인종 및 소수민족, 장애인, 발달/행동장애가 있는 사람, 노숙자*, 임신 혹은 수유기의 여성, 요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의 사람들, 난민집단, 약물사용 및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등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yone who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기저질환으로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의학적 조건이나 치료(항암 등)로 인한 면역시스템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yone who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어려움 있는 경우 · 의료적 치료 접근이 어려운 사람 · 예방적 활동 수행 어려운 사람 · 특수한 의료적 처치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사람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불안정 고용상태이거나 노동 조건이 유동적일 수 없는 사람 · 커뮤니티와 거리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 주거환경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경우 등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임시주택 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성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함에 따라 제도운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거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시원이나 고시텔로, 단독가구가 아닌 2인 이상의 가구나 아동이 있는 가구,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임시거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6개 시도가 시행중임에도 경기도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원시와 성남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시도별 임시주거비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1045	862	880	740	516
부산	84	86	59	78	63
대구	21	19	24	29	19
광주	0	0	0	0	2
인천	9	30	87	84	89
대전	40	38	39	40	26
수원	95	75	105	113	95
성남	93	71	61	17	35
천안	12	6	7	7	5
합계	1,399	1,187	1,262	1,108	850

출처 : 이동현외(202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21. 12. 17 이은주의원실 요구자료 재구성

주 : 천안시는 동절기 주거 임대료 지원

노숙인시설이나 생활시설을 활용한 임시거처의 경우도 성인 남성 단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이나 가족단위 노숙인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동생활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나 쉼터의 경우 이용대상이 명확하고 시설의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입소 정원 외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노인가구의 경우 수도권 4%, 소득하위가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가구별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단위: %)

구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비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일반가구	0.2	0.1	0.1	1.9	1.3	1.6
수도권	0.3	0.1	0.1	3.9	2.7	3.1
	0.2	0.2	0.1	0.1	0.0	0.1
노인가구	0.0	0.0	0.0	1.8	1.3	1.8
수도권	0.1	0.0	-	4.3	3.2	4.0
	0.0	0.0	0.1	0.1	0.1	0.2
소득하위가구	0.2	0.1	0.1	2.9	2.4	2.8
수도권	0.2	0.1	0.1	6.7	5.6	6.4
	0.2	0.1	0.1	0.2	0.1	0.2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코로나19 관련 긴급임시주택 지원의 경우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긴급임시주택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미임대 주택 중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나 중구 등은 지자체에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총량과 주거취약계층 공급량>

(단위 : 호,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총량(A)	29,725	30,135	44,731	45,122	53,652	67,987	63,490	67,924	54,792
A중 주거취약계층 용 공급분(B)	595	610	989	1,070	1,098	1,638	3,905	5,410	5,366
주거취약계층 공급률	2.0	2.0	2.2	2.4	2.0	2.4	6.2	8.0	9.8

출처 : 이동현 외 202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1. 12. 14. 심상정의원 2017년 이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 자료 요구, 재구성

그러나 LH를 통해 지원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 신청자에 비해 공급이 과소한 상황이며,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재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곰팡이,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낮은 주택의 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공급 중 주거취약계층 공급량은 미비한 수준이고 201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고, 주거안정성이 높은 매입임대 보다 전세임대주택 비율이 4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정책대안

1) 경기도 재난약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재난약자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정의하고, 재난발생시 인권에 기반한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 등을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재난약자의 권리, 재난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금지, 재난약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치, 관련 기구 등을 규정

2) (가칭)경기도 재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접근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금지,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저소득,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한 기본적 경제권 보장 등), 주거권 보장(노숙자, 이주노동자들의 비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 인권 가이드라인 발표. 경기도도 지역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재난시 인권에 기반한 원칙과 기준 마련

3) 경기도 긴급임시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 긴급임시주택 운영과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긴급임시주택에 대한 정의와 운영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와 안정성 확보

4) 경기도 차원의 긴급임시주택 확보 방안 마련

- :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긴급임시주택 수요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긴급임시주택 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
- : LH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공급 및 운영 내실화

5) 주거상향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 긴급임시주택은 좀 더 안정적인 주거로 진입하기 위한 임시적, 한시적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주택의 문제는 단시 물리적 인프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연계가 필요. 따라서 주거상향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연계 방안 마련

정책과제명 (가칭)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운영 및 협치체계 구현

1. 배경 (필요성)

-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참여,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민주권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됨.
- 민선 6기 연정, 민선 7기 협치를 넘어 민선 8기는 혁신적인 경기도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도민참여와 역량을 도정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과 시민력의 강화를 통한 협치 기반이 함께 형성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민선7기에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치지원관 활동,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협치 생태계를 마련함.
- 하지만 민관협치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이 미약하고 협치지원관의 역할부재, 행정조직의 유기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에 한계를 가짐.
- 민선7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과 그 토대가 되는 도정의 전면적 혁신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3.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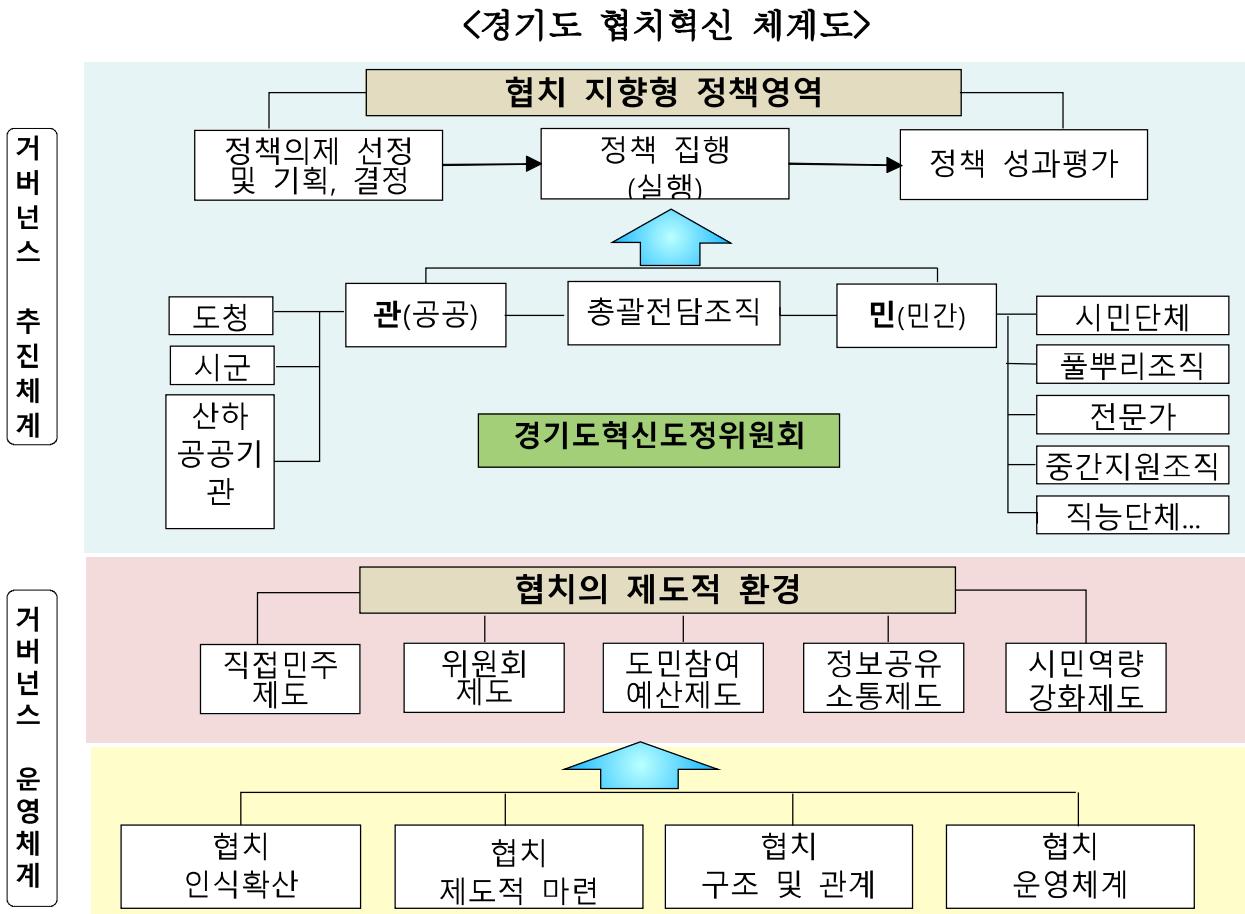
1) (가칭)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구성

- 경기도정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구성
- 혁신도정위원회는 경기도 정책 전반 및 도지사 공약을 점검하는 위상을 가지는 위원회
- 혁신도정위원회는 민관 협치기구로 기능하며 위원회에는 전문가, 경기도민 및 시민사회 관계자,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
-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

2) 총괄전담조직 설치 및 협치시스템 구축

-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총괄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
-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도 협치 시스템 구현

-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직속의 전담조직 설치(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사회보장, 인권 등등)
-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협치 지원부서 설치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체계 마련(행정, 공공기관, 민간중간지원조직 협력)



1. 배경(필요성)

-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불평등, 고령화, 실업, 농업·먹거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정책 발표, 12월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8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국회 통과,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 40% 감축 목표)하는 목표 설정.
-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20.7.7), 경기도형 그린뉴딜 발표(' 20.7.23, 일자리 25,2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2조 7,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 탈석탄 동맹(PPCA) 가입(' 20.9.1), 전국 탈석탄금고 선언 (' 20.9.8) 등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탄소중립 녹색전환으로의 방향과 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임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부족, 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개발 사업 포함, 불평등 해결 내용 부족,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공모사업에 의존, 재생에너지 목표 부족,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부족, 지역 일자리 확대와의 연계성 부족,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식·학습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으로 전환비용 마련 및 일자리 전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 보유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전국 최대로 도로 중심의 자동차 의존형 교통체계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며, 신도시 추진 등 개발사업으로 산지 면적이 감소하고 산림의 흡수량이 줄어들고 있음
-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에서 사회·경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 시스템 및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전환사회로 나아가야 함.

3. 정책대안

① 무엇을 할 것인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최소 2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해야 함
- 녹색전환 사회를 위한 지표로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건강지수(자살 및 우울증 증상 등 정신건강 반영)’를 설정함
- 산림·녹지공간과 연안·갯벌 면적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현재 면적을 유지해 탄소흡수원 총량을 지켜내야 함

②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전환 이행기반 구축

의제 2-1. 탄소중립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만든다.(현재 기금 대비 최소 10% 정도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 투입)

의제 2-2. 2023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전체 사업으로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을 10%로 상향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을 중단 또는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의제 2-3.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해 4대 기반, 1개 연대 정책을 중심으로 이행방안을 구축한다. 기반 중에서도 ‘예산’과 ‘참여협력구조(실행조직+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다.

* 기반 : 예산, 참여협력 구조(실행조직+거버넌스), 계획, 조례

* 연대 : 경기도 내 시·군 연계

③ 학습·인식

- [학교 환경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최소 10%를 학교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기반 마련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기간에 환경과목을 필수로 지정한다.
- [사회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예산을 1인당 1만 원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학습권을 제공하며, 마을 단위 곳곳으로 교육이 퍼지도록 한다.
- 정책결정자(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와 공무원, 경기도 소속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도를 마련한다.

④ 돌봄•적용

-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으로 구분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기후위기 취약 계층 범주를 확대하고 세분화한다. (예: 장애인(이동성 제한) x 1인 가구(거주형태) x 노후된 주택 거주(거주형태) 등)
-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전담기구’, ‘통합돌봄창구’, ‘마을돌봄회의’를 만든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돌봄·안전 현황을 살펴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 (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⑤ 농업•먹거리

-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 내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전달경로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경기도 전체 공공급식 및 공공기관 대상, 주1회 채식 의무화(또는 채식 식단 확대)를 한다.

⑥ 에너지전환

- 경기도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개선을 통해 최종에너지소비를 최소 10% 절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 상향.
- 경기도는 1가구 1발전소 지원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10%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안)’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사용-수리-폐기까지 전(全)과정 지원체계 마련

⑦ 건물: 주거·비주거

- 신축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의무화한다. 민간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달성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별 ‘건물 에너지진단사’를 양성, ‘마을기술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성능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집수리사업을 한다.

⑧ 교통•수송

- 자동차 도로와 주차공간 면적을 확대하는 예산을 녹색전환 교통 예산으로 전환 한다. 이를 통해 ‘복합수단 거리’를 확보한다.
- 경기도 안을 순환하는 버스이동망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망이 곳곳에 뻗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한다.
- 분리된 자전거 도로(Protected Bike Lane)를 확충하여 경기도 자전거 교통수단분 담률을 2025년까지 5%로 높인다.

⑨ 순환경제•자원순환

- 경기도 폐기물 총량제와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세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경기도 내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시군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한다.
-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하여 발생량은 줄이고 순환이용률은 늘린다.

⑩ 정의로운 전환•전환경제

- [정의로운 전환] ‘녹색금융’ 지원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공급한다.
- [기후일자리] 경기도에서 기후위기를 맞아 좌초되는 산업과 종사자 수를 전수 조사한다. 해당 산업과 근로자를 기후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 생산가능인구수 대비 최소 5%가 기후일자리에 종사하도록 한다.

1. 배경(필요성)

-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사회관계망의 약화,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초등, 장애인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그간 우리나라의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개선보다는 일자리 창출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옴.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소홀함을 놓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육성, 공급과정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소홀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됨.
- 시설중심적, 시장의존적 돌봄서비스의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부합하는 돌봄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돌봄의 사회적 책임 분배)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지역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산업의 50%를 4영역(영유아, 초등,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돌봄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음
 - 영역별로 돌봄 사회화의 편차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격차를 개선하는 정책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난맥상에 처해 있음. 그런데다가 4영역 모두 지역사회 돌봄을 정책 지향으로 채택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는 또 다른 돌봄 영역의장을 형성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돌봄은 보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초등 돌봄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노인 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그리고 장애인 돌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관련 쟁점이 존재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

- (개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정책

- 사회적 돌봄의 핵심은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므로 주체, 재원, 전달체계, 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서 쟁점이 존재함
 - 주체의 측면에서 핵심가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이나 현재 국공립 서비스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제기됨.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

린이집과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민간 부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결과 서비스공급의 민간 영리 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음.

- 노인돌봄시설은 절대적으로 민간의존적임. 재가 노인요양기관 중 국공립은 0.7%, 시설은 2.1%(2019년 기준)에 불과함.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시설수	설립 주체		
		국공립*	민간	
			비영리법 인/단체	개인·영 리법인
어린이집(2019)	37,371	11.6	9.0	79.4
유치원(2020)	8,705	57.2	0.0	42.8
아이돌보미(2020)	227	4.4	95.6	0.0
초등	돌봄교실(2021)	14,728	100.0	0.0
	지역아동센터(2019)	4,217	0.8	29.2
	다함께돌봄센터(2021)	424	20.0	77.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020)	304	-	-
노인장기요양	재가(2019)	19,410	0.7	13.6
	시설(2019)	5,543	2.1	24.7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2020)	975	-	-

출처 :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외.

주 1)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민간위탁 운영 포함. 다른기관은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포함함. 2) 학교돌봄교실은 사학재단법인이라도 국공립으로 포함시킴.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 서비스 공급 시장 문제를 변화시킬 핵심정책임.

- 국가가 서비스 직접 공급과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년간 사회서비스원은 조직 설립 자체에 매몰되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 종합재가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인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 차이가 없는 시급제 계약적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고용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

-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와 전달체계의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
-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그러나 이미 중앙정부 중심으로 대상별·영역별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제도별 재정지원 방식과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역중심의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
- 분절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공급주체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도 각 부처 사업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자자체의 권한과 통제 범위가 쪼개지고 제약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도, 이용자 효과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제도 재편,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권한과 책임 부여,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 구축이 전제될 때 가능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규모 및 종사자 확대목표(안)>

(소속시설) '19년 9개소, 종사자 550명 → '22년 45개소, 3,944명

사업유형	'19~'22년 계		2019		2020		2021		2022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계	45	3,944	9	550	10	745	12	1,309	14	1,340
종합재가센터 (요양시설 포함)	25	3,664	4	480	5	675	7	1,239	9	1,270
국공립 어린이집	20	280	5	70	5	70	5	70	5	70

출처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규모 및 종사자 목표>

(소속시설) 33개소, 종사자 374명

*출처 :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안)

3. 정책대안

- (돌봄의 공공성 강화)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 영역별 세부적인 이슈의 차이는 있으나 각 영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국공립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임.
 - 영유아 및 노인 국공립 돌봄 시설 비중 확대
 - 초등 돌봄 공적인프라 확충

- 장애유형을 고려한 공적 인프라 확충
- (돌봄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인정) 열악한 돌봄노동에 대한 근로조건,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
 -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대
 - 돌봄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근로감독 방안 마련
 - 돌봄노동자의 전문성과 자질 강화
- (돌봄노동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사회권의 균형) 돌봄의 관계적 속성으로 인해 돌봄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는 감정적·정서적 갈등과 긴장, 보다 심각한 수준에서는 학대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돌봄 관계에서 학대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돌봄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다 일상적인 수준에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이 용자의 사회권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명확한 서비스 범위의 설정

(돌봄노동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학대와 인권침해로부터의 상호 보호

(돌봄 관계에서 학대와 인권침해의 문제는 주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루 어져 왔음. 반면, 이용자가 가하는 학대와 인권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함)
 -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 (돌봄노동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가칭> 사회적돌봄 의제위원회 구성) ILO는 혁신적 돌봄정책의 수립에서 사회적 대화와 대표성의 중요성을 돌봄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함. 더불어 ILO는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 노동자와 수혜자 모두의 이해, 그리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방식의 노동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함
 - 돌봄정책은 돌봄 수혜자, 가족 안과 밖에서의 유/무급 돌봄노동자의 권리, 주체성,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임. 따라서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돌봄 수혜자, 노동자, 가족돌봄자를 포함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함.

1. 배경

1) 폭등하는 주택가격, 부족한 장기임대주택

- 수년간 수도권 주택가격의 폭등과 주택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와 자산양극화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정도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이며, 이 중 60%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

< 그림 8. 지역별 자가보유율 >



출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전월세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했음.
- 대한민국의 공공(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OECD 기준으로 적은 비중은 아니나, 공공 이외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체(영리·비영리Developer,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는 거의 없다시피 함. 그래

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장기임대 주택의 비중은 매우 적은 상황임.

2) 공공의 땅장사로 민간만 배불리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 경기도는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도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자치단체임.

-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공공택지현황

○ 경기도에서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 12개 지구, 공공주택사업 57개 지구 등 총 69개 지구에서 약 155조의 사업비로 909,592세대, 수용인구 2,264,813명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63,975,000m²임.

○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위치는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임. 인천 계양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사업지구는 경기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음. 총 공급 세대수는 17만 3천 세대이며 인천 계양에서 공급될 1만 7천 세대를 제외하면 15만 6천 세대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임.

- 공공택지는 국가 및 지자체의 국토 · 도시계획권과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조성되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근본적으로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발생함.

-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공공 택지 개발사업은, 그 목적과 개발 이익의 환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하지만 현재 택지개발 사업 과정은 공공의 땅장사로 전락하여 민간 건설업체 와 개발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어 사업의 본래 목적은 퇴색된 지 오래임.

3) 경기도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허약한 주거정책 부서의 역할과 기능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를 SH공사가 전담하여 조성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쉬프트, 사회주택 등으로 공급하

고 있음. 반면 경기도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대부분 LH공사가 사업을 담당하며 국가의 주택정책에 따라 조성하고 있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일부의 공공택지도 경기도의 독자적인 주택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성되고 있음.

- 주택관련 행정조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와 독립적으로 주택정책실을 두고 그 산하에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지원센터, 전략사업과, 주택공급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과 등 11개의 과 단위 조직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도시주택실 산하에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 주택정책과가 등이 있으며 공공주택과 같은 존재하지 않음.

2. 문제점

- 폭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요원함에도, 공공에서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도,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도 부족하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음.
-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은 단순히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 직장과 학교, 문화생활, 인간관계 등 시민 삶의 중요 요소들마저 종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음. 즉, 주거 불안의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임. 이는 곧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로 연결됨.
-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는 것은 택지개발 사업의 근본 취지를 의심하게 됨. 사유 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까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하지만 공공의 땅장사로 민간업체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서, 덩달아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공익적 명분을 앞세운 강제력의 행사가 공익에 기여하지 않고 민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1,300만 도민들의 주거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의 규모와 위상에 안맞게 주거 담당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보니, 결국 자체적인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사실상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중앙정부 공기업이 대신 해주는 형국임.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 정책 관련 필요와 요구가 제대로 투입될 수 없음. 경기도가 주거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거 문제를 방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정책대안

1) 경기도형 서민주거안정 정책 개발 및 추진

▶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한 통합 임대주택정책 수립

- 서민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공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현재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의 정비가 더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확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임대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 최하층 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역시 지금보다는 더 확충되어야 함. 행복주택 역시 청년들이나 1인 가구 등의 세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기는 하나 물량이 많지 않고 거주 기간이 너무 짧아(6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런 문제를 보완하여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같은 정책은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책이므로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광교신도시나 판교신도시의 경우는 임대 종료 후 분양 과정에서 LH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음. 정책 실효성도 낮고 갈등만 야기하는 정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음.
-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사실상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무방함. 경기도의 주거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입주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잡고 있음. 예컨대, 서울 목동 국유지에 공급하려던 행복주택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좌초되었음.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공존하는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가꾸고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함. 경기도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는 통합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이 필요함.

- 정리하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대폭 확대 공급해야 하며, 단순히 공급을 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통합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 임대주택의 확충과 함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세대를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양질의 분양주택 정책도 필요함. 집값의 핵심이 결국 토지가격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음. 여기에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사업 초과이익의 도민환원제도를 결합하여,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은 다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민간의 적절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함. 다만 민간에 위와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는바, 결국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만이라도 저렴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적극적 시범 사업을 통한 정책 보완

- 주거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안임.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 해야 함에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내용이 바뀌게 되면 결국 구호만 남게 됨.
- 주거 정책의 방향은 단체장 개인의 의지나 철학이 아닌,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임. 어느 정당의 어느 단체장이 도지사가 되더라도 주거 정책은 혼들림 없이 간다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새로운 단체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보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함.

- 또한 주거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큰 틀의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완성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시기에 맞는 조정과 변화가 불가피함.
- 따라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 외부효과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지개발, 공공주택, 신도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 사업도 많이 있음. 이런 사업지구에서 위의 주택들을 공급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노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함.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

▶ 공공택지의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민간건설사 공급 제한

- 공공택지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조성됨. 그러나 그린벨트를 용도변경해 조성된 공공택지내의 주택용지는 중소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용지 조차 감정가로 민간건설사에게 공급되고, 건설사는 이 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고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을 가져가고 있음.
- 1기 신도시건설 당시 공공택지에서는 원가연동제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함. 원가연동제에서는 택지 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낮은 분양가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였으나 이후 분양가자율화에 따라 건축비는 자율화되었고 2013년, 2016년에는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 택지마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하면서 택지비도 올라 결과적으로 공공택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도록 되었음.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여 택지비의 거품을 빼고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 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내 주택용지의 택지조성원가로 공급

-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내의 주택용지는 민간건설사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공공택지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 중

소형 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중 소형 주택부지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 임대주택 부지 및 중소형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공공기관에게 공급하여 택지비와 분양가를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우선 공급하여 경기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공공택지 계획 · 조성 · 주택 공급단계별 경기도 참여 및 경기도민 공급확대

- 공공택지 계획시 경기도 및 시 · 군의 동의를 필수적 절차로 하고 지구 지정시 의제 처리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시군 도시공사의 참여를 확 대해야 함.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현재 공공택지 개 발사업의 대부분을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여 번 수익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음. 결국 그린벨트가 축소되고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당한 경기도와 경기도민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형국임. 경기주택도시 공사가 사업에 더 적극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다시 경기도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공공택지내 임대 및 분양주택의 공급과정에서 시 · 군 및 경기도민의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공공택지 및 신도시를 통한 경기도 주택가격 안정과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함.

3) 경기도 주택실 신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강화

▶ 경기도 주택실 신설

- 경기도민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주택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주택정책실 산하에 주택정책과, 주택 정책지원센터, 전략사업과, 주택공급과, 공동주택지원과 등 11개의 과 단위 조직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도시주택실 산하에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 주택정책과가 등이 있으며 공공주택과 같은 존재하지 않음.
- 민선8기 경기도는 도시계획 부서와 독립된 주택실을 신설하여 경기도내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장기임대주택,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경기

도형 혁신 주거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국가 및 31개 시군과 유기적 협력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강화 및 공공성 확대

-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임. 경기도내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의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건설사 중심의 주택분양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경기도 공공택지는 경기도의 주택정책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광교신도시 조성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규모와 사업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택지개발 사업과 분양주택 공급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음. 민선 7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본주택을 추진하였으나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까지 이어지지 못했음. 민선 8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서민주거 기능을 확대하여 장기임대주택,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

[분야별 과제]

■ 인권

정책과제명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1. 현황 및 필요성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정책이자 사회 안전망. 그러나 2018년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성평등 가치에 혐오와 차별의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예에서 보듯이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경제/감염재난은 현 사회의 불평등과 소위 ‘정상 가족’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음.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이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임. 경기도는 인권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촉구되는 사회 변화에 비춰 ‘인권’의 의미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탈북민 여성 등 ‘인권’이라는 틀 안에 뭉뚱그려 정책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제도 변화가 필요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2020)’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 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힘.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⁶⁾. 즉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여전히 미지수. 이에 대해 2022지방선거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 전개를 위한 지방정부의 우선 과제 선정을 통해 경기

6) 한국여성단체연합(2022.02),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돌봄·연대·정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센더정책’, 7P.

도의 인권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함.

2.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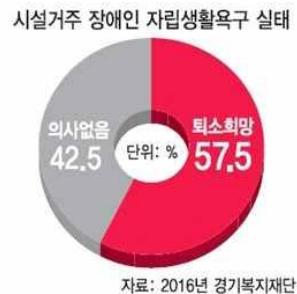
- ①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대중 교육 실행 구체화
- ②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지원 조례 마련 :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고려한 전문화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 지역별 설치하고 지원예산 대폭 확충.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③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 통보제 도입

정책과제명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1) 배경(필요성)

- 지역사회 내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 조치 권고
 - *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2011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4항 개정
 - *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을 둠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1,557곳의 장애인 29,662명
 - * 2017년 국가인권위, 10년 이상 거주(58.1%), 비자발적 입소(67%)



* 국정과제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2년)

: 장애인거주시설예산은 지속증가(2021년, 10.1%) 탈시설장애인의 주택 및 정

착금 지원 부재

*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 177명(14.5%) 확진(전체인구 감염수준의 4.1배)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불법시설 포함)이 가장 많은 지역임.
- 2016년 경기장차연의 투쟁이후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500명의 자립을 약속하였으나 매년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31개 시군을 통틀어 평균 10여명에 불과함.
- 2019년 오산시에 위치한 00재활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해 시설폐쇄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0재활원에는 3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통합되지 못한 채 수용당하고 있음.
-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까지 선포하였음
-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경기도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시. 군단위에 자립생활주택 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 있음.

3) 정책대안

- 경기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만호 공급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2,000만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월 240시간, 2년간 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전면 개정

정책과제명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의 이동지원센터는 대부분이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 사이의 중개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광역 간 환승, 연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2016년 광역이동지원 연계 시스템은 설치되었지만, 예산의 문제와 프로그램 호환의 이유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시스템 연계에 소극적임.
- 광역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경기도는 2020년 11월 경기장

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약속했지만, 예산과 실질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이 다름. 매번 광역이동의 욕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이 없다면 지금까지 실패를 반복했던 이동권 정책과 다를 게 없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성 있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전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2020년 9월 기준)

지역	운영방식	위탁기관	접수수단				운영인력 (인)	비고
			전화	문자	홈페이지	어플		
경기	직영	-	0	-	0	0	-	
강원	위탁	(주)케이티아이에스	0	0	X	0	16	
충북	미운영('20년 기본계획 결정, '21년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							
충남	위탁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0	0	X	X	21	
전북	위탁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0	X	0	0	24	
전남	위탁	(재)전남복지재단	0	0	X	X	17	
경북	위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0	0	0	X	18	
경남	위탁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0	X	X	X	23	

2) 정책대안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
 - 시·도지사, 환승·연계·접수·배차 등을 포함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기도 지원
 - 서비스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여 운영사항 통합
 -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필요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

- 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위한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
- 특별교통수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하여 바우처·임차 택시 확대

정책과제명 경기도 학대 대응기관 확대 및 학대 대응 부서통합 운영

1. 배경(필요성)

- 사회전반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는 공적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회일반의 공감대가 형성됨.
-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학대 대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큼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대상자별 분절적 학대 대응기관 운영과 협력 체계 미흡, 학대 대응기관과 전문 인력 부족, 사후지원을 위한 쉼터 등의 영세성으로 학대 대응에 한계가 큼.
 - 최근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아동일시보호시설 확대 등 인력과 시설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성인보호 영역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뤄지고 있지 못함.
- 학대 등 인권침해는 사회문제로서 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조직체계에 따른 종합적인 협의 조정 기능 부재, 학대 문제와 대응을 민간위탁기관에 기대는 책임의식 부재 등으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경기도 조직을 보면 아동의 경우,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노인의 경우, 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의 경우,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 학대담당부서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해당부서는 학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학대대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학대대응기관의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성이 있으며, 학대대응기관의 독립적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경기도 차원의 학대대응기관 확대와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 학대대응전담기관 추가 설치와 전문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보호서비스 기능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중앙정부의 아동보호체계와 성인보호체계를 구분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학대 예방과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영역별 학대 대응 부서의 통합과 독립부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학대는 물리적 힘이나 위계, 의존, 취약성 등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기인하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상해, 심리적 피해 성적 피해, 경제적 피해, 죽음 등을 야기함.
 - 취약한 대상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나 착취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으며,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임.
- 인권 보호 의식의 발전, 즉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대응체계를 작동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0년도 경기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9,192건(전국 38,929건의 23.6%), 노인 학대 신고접수 2,592건(전국 16,973건의 15.27%),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813건(전국 4,208건의 19.3%)임. 경기도의 학대발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학대대응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보건복지부. 2020년 영역별 학대현황보고서. 2021.)
- 현재 학대 대응 공적체계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 익옹호기관과 피해자 쉼터가 보호서비스(Protection & Advocacy)를 수행하고 있음. 아동의 경우, 2021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학대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학대 대응체계의 보호서비스는 학대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행위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와 긴급지원, 장기적 보호 및 치료지원, 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적 접근, 재발 방지, 예방 교육 등을 포괄함.
 - 2021년 말 기준 경기도내 학대전담 대응기관으로 아동의 경우, 시·군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340명),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47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22명), 피해아동쉼터 12 개소, 피해노인쉼터 2개소(10명),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12명)가 운영 중임.

- 아동, 노인, 장애인 각 대상자별로 분절적 학대대응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학대 대응기관의 절대적 부족, 조직 규모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성으로 인해 학대 보호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매우 큼.
 - 중복대상(장애인 있는 아동 또는 장애노인)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례접수 과정에서의 혼선이 초래되고, 포괄적인 보호서비스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학대 대응 기관의 부족, 조직규모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학대사례에 대한 조사, 피해회복지원, 지역사회 복귀 등 개입단계별 전문적 역할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학대 대응과 예방,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개입과정별 지역사회 내 희망복지 지원단, 찾아가는 주민센터 등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 지원기관, 경찰 및 APO, 민간기관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학대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임을 갖는 경기도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전 담부서 간 협력과 조정 등을 위한 경기도 조직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이로 인해 경기도 내 학대에 대한 종합 정책 부재, 학대 대응기관 간 협력 조정 부재, 보호서비스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 등 협력 체계 미비 등 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학대대응기관의 학대와 함께, 학대 예방과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분산된 부서의 통합과 독립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함.
 - 경기도 발생 학대 등 인권침해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영역별 학대 대응기관, 민간기관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아동의 경우 중앙정부의 학대예방과 방지를 포함한 정책지원체계가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일원화되었음으로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제시된 ‘경기도아동권리보장원’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함.

3. 정책대안

1) 학대대응기관 추가 설치

- 아동 영역 학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설치 및 기능강화
 -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 운영_아동권리기반 정책조정 체계 강화
- 노인영역 학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기관 추가 설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 추가 설치: 노인인구 비례 권역조정을 통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설
 -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2개(경기남부, 경기동부) 추가 설치
- 장애인 영역 학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기관 추가 설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 추가 설치(경기 동부, 서부)
 - 피해장애인(성인) 쉼터 2개(경기 동부, 서부)
 -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설치: 4개 권역별 2개(남,녀) 총 8개 설치

2) 경기도 학대대응부서 통합 운영

- 행정1부지사 학대담당관 신설하여 독립적 운영
- 학대담당관 내 학대정책팀, 아동학대대응팀, 성인학대대응1팀(노인), 성인학대 대응 2팀(장애인) 조직 구성 운영

■ 안전

정책과제명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1. 배경 및 필요성

- 성차별, 여성 혐오에 기반하여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젠더 폭력은 변태, 양산되고 있음. 여기에 퇴행적으로 일어나는 ‘성평등 의식 없음’은 사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일정 부분 강제 할 근거들이 조례 형태로 담겨있지만 적극적 조치 또는 실현 가능성은 담는데 턱없이 부족함. 인터넷 기반 여성폭력 상황과 혐오 문화를 바꿔 내기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개선해 가기 위한 근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출되고 보강되어야 함.

2. 정책대안

- 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업 강화, 이를 위한 예산 확충
- ②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 개별 공간 등 확충등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 ③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담긴 조례개정
- ④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탈학교 여학생, 탈 가정 여성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환경 마련과 임시 보호시설 확충

정책과제명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청년여성 1인 가구 정책은 청년정책의 젠더화 점검 및 범주의 고려가 요구된다. 여성들의 정책 활용 경험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젠더 정책은 분리되어 있으며, 청년 정책의 몰 젠더성, 청년 세대 경험의 교차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대상 폭력범죄, 스토킹, 주거무단 침입, 성폭력 노출의 위험 등등 주거 불안 등이 남성 청년1인가구와 달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지점임

무엇보다 여성청년 1인가구의 경우 ‘일시적 주거자’로 인식되는 편견에서 나아가 도민 1인으로서 기본 주거권이 담보 되어야 함. 즉 일시적 주거약자로서

청년여성 1인 가구에서 주거 기본권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나야 함. 여기에서는 ‘보호담론’에서 ‘자원과 돌봄 공유 구축’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의미함

2.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정책 중 ‘소셜 다이닝’ 등은 청년여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음. 청년 여성1인 가구를 훈육 및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정부의 남성 중심성, 가부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책 수행자가 반드시 지양해야 할 태도다. 활성화된 여성 공동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정책 정보제공 방식이 청년 여성1인 가구에 친화적인 방식이 아님은 현재 다수의 정책적 접근에서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여성들의 정책 활용 경험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젠더 정책은 분리되어 있음은 경기여성단체연합의 지역 조사에서 도출된 바임. 청년 정책의 물 젠더성, 젠더정책에서 청년 세대 경험의 교차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특히, 청년 정책의 확대 속에서 청년 1인 가구 정책은 주거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이 어떻게 젠더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전 없음에 주목해야 함. 개인의 독립, 자립 욕구를 수용하되 젠더, 계급, 연령 등의 관계 속에서 자율성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청년 여성으로서 ‘혼자 삶’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 남성, 사회와 어떤 관계에 자신을 시키는지의 주체적 행위라는 분명한 이유에서임

3. 정책대안

- ① 젠더 폭력 피해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 ② 각종 청년정책 지원사업에서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 ③ 청년주거지원 정책 사업에서의 청년 여성1인 가구의 ‘안전’에 주안점을 둔 특수성 반영한 지원정책 사업 시행

1. 배경 : 경기도 공공의료 불평등의 현실

1) 의료자원의 불평등

-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존
- 2018년 기준, 우리 공공의료원은 221개소로 전체 병원의 5.7%에 불과함(일본 18.3%, 독일 25.5%, 프랑스 44.7%)
-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중은 10.2%로 OECD 평균인 71.4%에 비해 턱 없이 낮음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40개소,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141개소, 심뇌혈관질환치료 인증병원이 없는 곳은 177개소임.
- 경기도의 경우 1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7개소, 의사수 223명
-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59명으로 서울(3.12명) 대비 절반 수준임.
- 위와 같은 현실로 인해, 경기 북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응급시설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림.
- 특히 가평, 양평, 연천, 동두천 같은 지역은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같은 도심지역은 1시간 이내 광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0%일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큰 상황임.

2) 팬데믹, 기후위기

-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임
- 기후위기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알러지, 환경파괴, 폭염 등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2. 문제점

1) 의료 취약계층인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

-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국내 전체 수급자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이는 고스란히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함.

- 가장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 가장 소외되어 있다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 당장의 비용 손실을 계산하는 것보다, 제 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2) 광범위한 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초래하는 건강위협 요인의 증가

- 행정구역넓이와 인구밀도의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의료지원은 오히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집중되어 있음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감염병이나 재난, 환경 등에 의한 다양한 건강 격차 문제가 발생

3)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

-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건강증진 교육,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중심 의료체계로의 재편 및 병상 증가

*참조. OECD 국가의 급성기 병상 당 활동 의사수 추정

3. 정책 대안

1) 민간의료 서비스와의 경쟁이 아닌 공공의료에 집중이 필요

- 인구 밀집 지역은 이미 양질의 민간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도심지역에서 민간 의료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함.
- 민간 의료서비스와 경쟁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외면당하게 됨.
- 도내 취약지 및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병상확보 및 재난상황 대비 기반 구축 필요

2)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진료소는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기본단위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국가의 급성기 병상 당 활동 의사수 추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nada	1.1	1.1	1.1	1.2	1.2	1.3	1.3	1.4
Denmark	1.1	1.2	-	1.3	1.5	1.6	1.6	-
Finland	0.9	0.9	0.9	1.0	1.0	-	-	-
France	0.9	0.9	0.9	0.9	1.0	1.0	1.0	1.0
Germany	0.6	0.6	0.6	0.6	0.7	0.7	0.7	0.7
Italy	1.3	1.3	1.4	1.4	1.5	1.5	1.5	1.5
Japan	0.3	-	0.3	-	0.3	-	0.3	-
Korea	0.3	0.3	0.3	0.3	0.3	0.3	0.3	0.3
Spain	1.5	1.6	1.6	1.6	1.6	1.6	1.6	1.6
Sweden	1.6	1.6	1.6	1.7	1.8	1.9	1.9	-
United Kingdom	-	-	-	-	-	-	-	1.3
United States	0.9	0.9	1.0	1.0	1.0	1.0	1.1	-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2019

3) 의료인력의 충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의료진의 순환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

정책과제명 취약계층 미디어 돌보미 지원사업

1. 배경(필요성)

-대다수의 사업이 언택트 서비스로 대체됨에 따라 예비 노인 혹은 노인들은 적응의 어려움에 있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QR체크와 키오스크 주문을 해야 하고 예방접종도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신청도 방문접수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2.7%에 머무름. 디지털 활용 수준이 6-70% 임(2020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
- 2020년 현대사회 정보격차 및 정보 소외 현상 관련 조사(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도입 증가로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는 질문에 85.5%가 동의했음.
-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주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각 어플마다 접근방법과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외에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미디어 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3. 정책대안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돌보미 지원
- 주 대상 : 예비 노인, 노인, 장애인
-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내의 인력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
- 미디어 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 실시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

※출처: 2020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

2020년 현대사회 정보격차 및 정보 소외현상관련조사 (트렌드모니터)

1. 배경(필요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 OECD 37개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60%로 37개국 중 33위였으며, 고용률은 57.8%로 31위를 나타남
- 특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 30대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65.0%가 육아, 가사 부담을 꼽았음
- 경기도가 매년 150곳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내 영유아 인원에 비해 확대폭이 적어 지난해 기준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7.7%로, 전국평균 20.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3. 정책대안

- 경기도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주 대상 : 경기도내 맞벌이 가정
- 경기도내 공공보육시설 확대로 안정적인 보육시간을 보장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과 경제활동에 있어 위험 감소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과 사회활동 및 경제 활동 참여 보장함
- 민간어린이집 전환사업등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정책과제명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경기도

1. 배경

-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유아동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과 자녀 성장 이후 단시간노동자로 복귀하여 남녀 노동자의 임금차이와 노동조건의 차이가 나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10여년 전 시작한 초등돌봄, 유치원방과후는 학부모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었으나 더 이상 학교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음. 지자체에서 돌봄을 담당해 성공한 사례가 확산되어 학부모들은 지자체 주도의 돌봄을 기대하고 있음.
- 청소년 또래집단은 학교 외의 공간에서 여가를 누리기가 힘든 구조임. 스터디룸, 노래방, 불링장, PC방 등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공간이 많음. 그래서 용돈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또래문화는 스마트폰 게임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음. 공원이나 놀이터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나 성인 중심으로 공간이 마련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게임 말고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공간을 지자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책대안

- 1) 행정구역별 돌봄 거점센터 신설
- 2) 우리 동네 청소년 놀이터 신설
- 3)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통하여 돌봄센터, 청소년 놀이터 확대
- 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정책과제명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 수립

1. 배경(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3,354가구)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이며, 그 증가 속도가 빠름. 1인 가구 증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1인 가구 증가가 문제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고독사 등 잠재적 위험 노출이 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 특히 고독사⁷⁾의 문제는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31일에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 죽음은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임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31일에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6.24.제정)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2020.10.8.제정)가 제정되었음
 -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문제는 죽음 이전의 삶 즉, 1인 고립 가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이나 건강가정기본법(2018년 개정)이 공통으로 정하는 바는 “1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함
 -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연령 및 성별 등 계층의 다양성으로 제도나 정책 마련의 어려움 있음
 - 정부는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기획경제부, 2020) 크게 5 가지 영역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포용이나 삶을 지원하는 조사는 미흡함(경기복지재단, 2020).
 - 촘촘한 돌봄(노년기)+느슨한 연결(청년.중.장년기), 복지+자조가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1인 고립가구 종합대책은 고독사 예방 대책과 자연스럽게 연결. 통합되어야 함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7%인데 비해, 경기도는 27.6%로 전체 가구 대비 그 비중이 낮지만, 전국 1인 가구의 21%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20).
 - 일본의 경우 1년간(2020년 현재) 30,000건의 고독사가 나타나 사회적 이슈다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객관적 통계기반 조사가 없으며, 유품 정리사이자 고독사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김중철 전문가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에 200건이던 것이 2019년 2,880건(김중철 전문가)

7)고독사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으로 거의 10배로 증가해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함

- 1인 가구의 주된 욕구는 주거정책이 공통적으로 1순위였으며, 청년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안전이, 중년기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책이, 노년기 건강과 돌봄 문제 등의 주요 과제가 됨(경기복지재단, 2020).
- 핵심 위험 대상층으로 ‘고단한 홀몸노인’(경제기반이 취약한 노년기 1인가구), ‘막막한 홀로서기’(이혼·사별 비정규직 장년 여성) 대상층으로 나타남
- 아래 조례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 등에 관한 조례는 이원화된 체계로 존재하며, 상호 연결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함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 6.24 제정, 7.15일부터 시행)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시행 2020.10. 8.] [경기도조례 제6754호, 2020.10. 8., 제정]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p>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p>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p> <p>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p> <p>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p> <p>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	--

3. 정책대안

- 1) 경기도 차원의 조례 통합 또는 연계방안 구축
- 2) 1인 가구 종합대책 및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과 추진
 - (1)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영역 등 다각도의 종합대책 포함
 - (2) 느슨한 연결망 확장(자조를 기반)과 촘촘한 돌봄 망(복지)의 균형적 배치로 고독사 예방추진
 - (3)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연결고리 만들기
 - (4) 청년층, 중년층, 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 (5)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발견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 3) 공공 주거 정책과 연계된 마을 중심 통합형 시스템 가동

■ 일자리/경제

정책과제명 경기도민의 성평등한 워라밸을 위한 고용정보공개 제안

1. 배경(필요성)

- 경기도 내 노동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많은 시설 및 정책은 마련되어 있음
- 취·창업을 위해 마련된 시설 및 정책은 많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기업 및 사업체의 성평등 관련 고용정보 없음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워라밸링크가 있으나 아동돌봄, 가사예약, 온라인 상담 등에만 치중되어 있음

3. 정책대안

- 경기도 기업 및 사업체의 고용정보공개를 통한 성평등한 고용 문화 확대
- 주 대상 : 경기도내 기업 및 사업체
- 기업 및 사업체의 고용성비, 육아휴직, 직종, 직급, 직무별, 근속연수등의 정보 공개를 통해 일생활균형(워라밸) 정보제공
- 정기적 정보공개를 통해 도내 기업(사업체)의 성평등한 고용 개선여부 확인

정책과제명 취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 경기도 플랫폼 확대

(1) 배경(필요성)

- 청년의 실업률 증가와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에게 소요되는 구직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하는 사업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광명시, 대전시, 천안시, 경상남도 등 사업 진행
- 취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청나래' 대여 사업은 수요에 비해 상반기 조기 마감되

는 상황으로 이용 대상이 한계점이 있어 경기도내 저변확대 필요.

(3) 정책대안

1) 지역별 플랫폼 구축

- 경기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관련 정보 교류
- 지역사회 대형마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거점 확대
- 지역사회 채용 박람회와 연계

2) 플랫폼 인력 지원

- 수거 및 세탁 등 퇴직 및 장애인 노동자 활동 지원
- 거점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원활한 소통

※출처: 수원시청 공유수원- 청나래(취업준비 청년 정장대여) “공공누리”

정책과제명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 가사법 조기정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1) 배경(필요성)

- 지난 5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가사법)이 통과되었음.
- 이 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가사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가사법의 조기정착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경기도가 지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직간접노무비 상승으로 제공기관 부담이 예상됨. 이로 인한 이용 요금 상승, 경쟁력 약화로 제공기관이 직접고용을 거리게 될것으로 예상됨.
- 가사법을 살펴보면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을 하려는 국가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음. 즉 인증기관의 성패여부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음.

- 시장수요 활성화와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필요 함.

(3) 정책대안

1) 인증기관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급하여 공익제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 인증기관에 대한 (노무, 회계, 영업 등)전문인력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모델 도입)
- 사대보험 법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 인증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앱(플랫폼) 개발
- 가사서비스 상품권 개발
- 공무원, 공공기관(광역, 기초 지자체) 직원 복지몰에 인증기관 입점

2) 가사노동자 지원

- 가사노동자 사회보협료 부담금 지원
- 주차, 연차, 퇴직금 지원
- 가사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고충처리 지원

정책과제명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프로그램

1. 배경(필요성)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고용을 전제로 작동되게 설계된 제도임. 사회보험가입자는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 시민의 삶에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고 안전판임.

○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며 불황국면에서는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경향, 한국경제에서도 실업은 고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존재해왔음.

○ 특히 청년들에게 고용과 일자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실업자 수/ 실업률 추이

-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실업자 수/ 실업률 통계는 살펴보면 공식적 실업자는 수는 약 100만명. 청년실업자는 약 32만명 ~ 42만명.

〈실업자 수/실업률 추이〉

[단위: 만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업자	97.6	100.9	102.3	107.3	106.3	110.8	103.7
실업률(%)	3.6	3.7	3.7	3.8	3.8	4.0	3.7
청년실업자	38.9	42.6	42.6	40.8	38.6	37.0	32.6
청년실업률(%)	9.1	9.8	9.8	9.5	8.9	9.0	7.8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 15~29세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공식적’ 실업자란 매우 엄격한 의미의 실업자로, 실업통계조사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하지만 이 실업 기준은 너무 엄격해 체감 실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실업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질적인 실업자에 주목해야 함.

- 확장(체감)실업자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확정해 고용보조지표로 2015년부터 추가적으로 조사 중

〈확장(실질)실업자 수/확장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고용보조지표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04	512	571	629	750	1,088	1,070
잠재경제활동인구	1,748	1,576	1,640	1,729	1,703	1,873	1,898
-잠재취업가능자	33	36	52	49	60	65	77
-잠재구직자	1,715	1,540	1,587	1,680	1,643	1,808	1,821
고용보조지표(3%)	11.2	10.7	11.0	11.6	11.8	13.6	13.3
실업자	976	1,009	1,023	1,073	1,063	1,108	1,037
경제활동인구	27,153	27,418	27,748	27,895	28,186	28,012	28,310
확장경제활동인구	28,901	28,994	29,387	29,625	29,889	29,885	30,208

< 고용보조지표 >

실업자 이외에도, 취업자 중에서 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인 ②잠재취업가능자 및 ③잠재구직자로 구성됨

*확장경제활동인구(Extended Labour force)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 : 조사대상기간에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취업을 원하고, 추가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경제활동인구(Potential labour force)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으로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됨

*잠재취업가능자(Unavailable job seekers)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조사대상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잠재구직자(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취업을 원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 구직단념자는 잠재구직자의 일부분이며,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 기준이외에도 노동시장적 사유와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2021년 12월 기준 한국사회 실질실업자수는 4,005천명.
- 2021년 4/4분기 기준으로 경기도 15세~29세 실업자는 6만7천명이며,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는 약 27만명으로 추정

○ 경기도 청년층의 삶의 질 인식



자료: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참고하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고용, 여가, 교육 요인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응답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20대의 경우 42.2%가 고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 1순위로 MZ세대는 고용과 일자리 선택,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20대는 취업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임.

〈구직의 어려움〉

		(단위: %)								
		일자리 부족	근로 환경이 안 맞음	기대 하는 수입에 못 미침	경력 학력 기술 등이 부족	나이가 많아서	취업 창업 정보 부족	창업 자금 부족	기타	어려움 이 없음
전체		40.6	14.9	12.9	9.8	13.4	3.1	1.7	0.1	3.6
연령	15~19세	74.4	9.8	8.0	3.1	0.0	0.0	0.0	0.0	4.7
	20대	54.0	17.5	15.6	7.9	0.0	2.3	0.2	0.0	2.5
	30대	40.4	23.6	15.2	8.5	1.2	1.9	2.4	0.5	6.2
	40대	35.4	13.9	18.7	13.8	6.5	6.9	1.4	0.0	3.4
	50대	31.6	10.3	8.0	13.0	27.0	2.3	3.1	0.0	4.7
	60세 이상	22.0	7.3	3.8	6.6	52.5	2.6	3.5	0.0	1.8

자료: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경기도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구직의 어려움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15~19세는 일자리부족이라는 응답이 74.4%, 20대는 54.0%, 30대는 40.4%로 조사됨.

- 안정적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 문제(MZ세대를 들여다보다. 경기연구원 (2021))

○ 2020년 코로나19와 불황으로 청년층의 사회 진입이 제한되고,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은 ‘기회의 상실 세대’로 전락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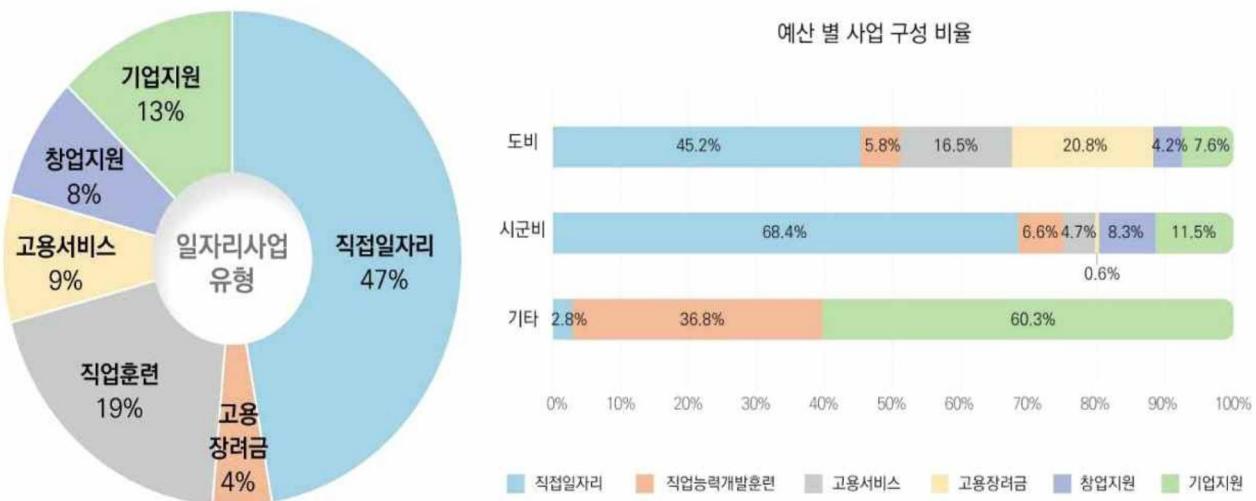
-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열기는 자산축적에서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반영

○ 현행 경기도 청년정책은 복잡하고 선별적으로 시행되어 정책수요자인 청년이 인지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음

- 현행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취업지원, 청년참여,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50여개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나 청년의 인지도 및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경기도 일자리사업 현황

<2021년 경기도 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예산별 사업구성 비율>



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202), 경기도 일자리사업 현황

- 2021년 경기도 일자리사업은 총 407개로 이중 국비지원사업 111개, 165개 사업이 도 일자리 사업으로 판단, 165개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이 전체 사업의 47%, 직업훈련사업 19%, 기업지원사업 13%
- 총 소요예산 407,907,183천원, 도비 353,334,463천원, 시군비 51,975,300천원, 기타 2,597,420천원

3. 정책대안

- 청년층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청년에게 사회경제적 기회를 획득한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청년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정책은 기회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
- 초기 사회진입단계에서 직장을 얻을 기회의 상실은 코로나 세대인 청년층의 미래 직장 경로와 삶에 큰 영향을 주기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
 - 청년층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제 1의 정책으로 고용·일자리정책을 요구
-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각종 일자리 정책을 재구성하고, 경기도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산업전환형, 사회혁신형, 참여소득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청년일자리프로그램’ 도입

<산업전환형(그린뉴딜) 일자리 제안>

- (재생에너지기반조성분야) 시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 에너지협동조합(시민햇빛발전소)은 현장 컨설팅, 유지보수 등 법정 환경관리 사무 이외의 관리 수요도 매우 큼
- (환경위해시설관리분야) 경기도에 약 30만개의 환경위해시설이 분포하나 관리인력은 태부족
 - 대기, 폐수, 폐기물, 오수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관리가 필요한 위해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 인력만으로 현장관리에 한계

< 사회혁신형 일자리 제안>

- (시민주도형 사회혁신프로젝트) 시민사회조직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고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활성화, 활력을 제고하는 분야의 일자리
 -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팍크 등 다양한 사회실험과 지역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실험공간을 확보하고 리빙랩 통한 혁신방안 도출
예시) 타임뱅크/지역화폐 코디네이터, 자원재활용선별장 확대 포함 자원재활용분야

< 참여소득형 일자리 제안>

- (사회적가치 창출 분야)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가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동체활동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노동임금을 지급
 - 친수환경정비단 운영, 청년 삶의 비즈니스모델 일경험지원, 자원재활용 코디네이터 운영
사례) 미국 Americorps, 광주시 광산구 시민수당

정책과제명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1. 배경(필요성) 및 문제점

- 사회적경제 조직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지역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 조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창업과 육성)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현재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0년 187개소가 설립되었고 2021년 3월 말 기준 5,177개소가 설립되어 약 28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수만 주로 파악하고, 성장과 유지되는 자료(DB)는 없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국사회 또는 경기도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
- 위 현황으로 보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심축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선 8기 경기도 정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에서 질적 성장”을 전개할 때이다.

[참조1]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문 현황											
연도	총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인정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지정	예비 (경기)	합계	일반	사회적	
2019년	4,115	664	402	262	215	179	36	3,236	2,638	456	142
2020년	4,663	731	480	251	237	197	40	3,695	2,952	615	128
2021년	5,177	875	491	384	250	179	71	3,873	3,072	675	126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내부 자료>

* 2017년 ~ 2018년 신규로 지정된(지정 종료일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은 44개(경기형 36개), 경기형 중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곳은 9개(20%

<출처 : 사람과 세상>⁴

[참조2]

부문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 현황											
연도	총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인정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지정	경기형예비	합계	일반	사회적협동	
2019년	4,115	664	402	262	215	179	36	3,236	2,638	456	142
2020년	4,663	731	480	19.4	251	- 4.2	237	197	10.1	40	11.1
2021년	5,177	875	491	2.3	384	53.0	220	179	- 9.1	71	77.5

1) 2019년을 기점으로 2021년 3월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은 1,062개 증가함(26%)

2) 1,062개는 주로 협동조합 637개(60%), (예비)사회적기업 211개(20%)임.
일반협동조합이 434개(40.9%), 사회적협동조합 219개(20.6%), 예비사회적기업 122개(11.5%), 인증사회적기업 89개(8.4%)

3) 증가율 측면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위(19년 -> 20년 34.9% 증가 / 20년 -> 21년 3월 9.7%)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율은 19년 -> 20년 증가율 13.3% / 20년 -> 21년 3월 11%)

[참조3]

창업 지원 대상과 주요 사업						
구분	대상	주요프로그램				
중소기업 (참조)	예비창업(사업자등록 x)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사업화 자금, 경영·자문서비스 멘토링, 창업교육 40h 등 재도전성공패키지 3년 이내 : 초기창업패키지(아이템 사업화 자금 및 맞춤 프로그램) 3년~ 7년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모델 혁신, 시장진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7년 이내 :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회적경제	예비 창업가(팀)	<table border="1"> <tr> <td>시군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 교육 :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td></tr> <tr> <td>도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설립 교육 및 컨설팅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공간 지원 : 예비 창업팀 ~ 창업 초기 기업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 : 시군 센터 교육 이수자 중 선발 </td></tr> </table>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 교육 :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설립 교육 및 컨설팅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공간 지원 : 예비 창업팀 ~ 창업 초기 기업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 : 시군 센터 교육 이수자 중 선발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 교육 :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상담(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설립 교육 및 컨설팅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공간 지원 : 예비 창업팀 ~ 창업 초기 기업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 : 시군 센터 교육 이수자 중 선발 					
	창업 후 인증 및 지정 이전	<table border="1"> <tr> <td>시군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아카데미 및 컨설팅 </td></tr> <tr> <td>도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지정 상담(사람과 세상 연계) / 창업컨설팅 /사업개발비 /공간 지원 </td></tr> </table>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아카데미 및 컨설팅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지정 상담(사람과 세상 연계) / 창업컨설팅 /사업개발비 /공간 지원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아카데미 및 컨설팅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지정 상담(사람과 세상 연계) / 창업컨설팅 /사업개발비 /공간 지원 					
	인증 및 지정 이후	<table border="1"> <tr> <td>시군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역량 강화 : 경영, 사업화, 판로 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td></tr> <tr> <td>도센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강화 : 컨설팅(세무/회계, 지역재산권 출원, 각종 인증 취득 등)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민간판로(온라인/오프라인), 지역 생협 입점 지원 등 </td></tr> </table>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역량 강화 : 경영, 사업화, 판로 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강화 : 컨설팅(세무/회계, 지역재산권 출원, 각종 인증 취득 등)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민간판로(온라인/오프라인), 지역 생협 입점 지원 등
시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역량 강화 : 경영, 사업화, 판로 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강화 : 컨설팅(세무/회계, 지역재산권 출원, 각종 인증 취득 등)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민간판로(온라인/오프라인), 지역 생협 입점 지원 등 					

13

2. 정책대안 – 양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정책

1) 창업 지원정책 개선

- 현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3~5년 정도로 중소기업 창업지원 7년보다 짧음, 창업의 양보다 지속성 및 가치성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같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7년으로 늘리고 그에 맞는 정책 개발’

2) 사회적경제 관리 체계 확대

-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정산 후 현장 실사를 통한 데이터 작성 및 추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유도

3) 창업 교육 현실화

-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적인 교육 외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당사자조직 의견수렴 후 내용(커리큘럼)을 마련
- 인사관리, 마케팅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운영 교육 실시.

4) 사회적가치 실현이 활발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및 물품 구매 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사회적가치 생산을 위한 활동 및 자체 평가, 경기도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체계 마련

※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2021년 8월)

5)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당사자조직 협의체 활성화

-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당사자조직 협의체 지원과 소통구조 마련(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 매칭 사업 마련)
- 지역 당사자조직 협의체를 민 · 관 · 정 구조 확대 및 지원으로 지역 내 소통구조 마련과 및 지역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정책 생산 활성화

■ 사회혁신

정책과제명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1. 배경(필요성) 및 현황 및 문제점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 OECD국가 중 2019년 기준 32.5%로 가장 크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20년 기준 8.5%.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비율 22.9%, 국회의원 여성비율 19.7%, 기업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2021년 기준 5.2%에 그치고 있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해고되었고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로 이는 남성에 비해 1.7배임.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접수된 범죄 피해는 2020년 기준전년 대비 2.4배 증가, 이 가운데 81.4%가 여성임 (***(페미니즘주권자행동 보도자료 인용)). 도대체 우리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거짓 언설은 이에 대해 무어라 할 수 있을까?

2020년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양성평등은 좋은, 성평등은 나쁨’ 의, 프레임으로 성평등은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음. 다양한 가족 구성권, 노동, 인권, 돌봄 영역 등에서의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정책의 확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제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짚어내어 시민의 안전과 나의 안전한 삶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정치적 행위 주체는 보이지 않거나 미미함.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성평등지수는,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음.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과 복지, 성평등 의식과 문화 등 3개 영역이며, 지역 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3개, 의사결정 4개, 교육 · 직업 훈련 2개, 복지 2개, 보건 3개, 안전 2개, 가족 4개, 문화 · 정보 3개 등 총 23개 지표로 지수를 측정하게 됨.

이를 근거로 한 경기도 성평등지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임혜경, 2019)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년 대비 4.7점 상승해 전국의 지역 성평등 지수 개선 폭(4.3 점)보다 상승폭이 컸음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가장 낮은 수치이며 <성별임금 격차> 비율은 크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성 격차가 증가, 경기도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88.4%, 2018년 87.0%, 2019년 88.5%로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54.2%인 133,426명에서 2018년 55.0%인 154,810명이고, 2019년 55.3%인 172,699명으로 비율 증가세임. 빈곤의 성비 격차 증가는 전국적인 경향이지만 경기도는 좀 더 그 추이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밝히고 있음.

이러한 상황인식 없이 여성/남성 동량에 집착하여 성별, 계층, 세대별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 2022지방선거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차적 차별에 대한 프레임을 세워 성별의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경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인지가 전제되어야 함.

30%가 채 되지 않는 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어떤 여성인가?’의 질문 이전에 의회 여성 의원의 양적 확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코로나 19가 남긴 정책적 변화 요구 지점에서 성별/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된 성인지 정책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함. 과연 현재의 도의회 성비 불균형의 상황에서 수렴 가능한가? 성평등 의제를 기반으로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의제 확산, 담당 부서와 타 부서 간 협업, 경기도 및 31개 시.군 예산 대비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비율(%),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의 성 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질적 모니터링 등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강화는 필수임.

2. 정책대안

- ① 민선 8기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여/남 동수 추천, 각 당의 선언 및 의무화
- ② 기초의회 후보 여/남 동수 공천 및 여성 대표성 50% 확대
- ③ 기초 광역 단위 부단체장에 최소 여성 1명 이상 임명 의무화

1. 배경(필요성)

-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의 정책요구를 수용하여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민관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에서 제안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해 왔음.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통해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민선8기에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현황

- 민선 7기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해 왔음. 2020년 3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21년 5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구리, 성남, 평택, 광명, 안성, 의정부 등 7개 시군에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북부 지소도 설립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2021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공동주최한 경기시민포럼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 및 시군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확산되어 12개 시·군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국시민활동지원조직협의회 등 공익활동·마을·사회적 경제·사회혁신 등과 관련된 시민사회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추진하였음. 정책협약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의 제정, 시·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정책대안

-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 경기도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 경기도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효성 확보(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마련/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화와 31개 시군으로의 확대
 -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화(별도의 민간전문단체 설립 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계)
 - 4)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지역재단 설립지원 등
 - 5) 사회적 가치 추구형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정책과제명 경기도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1. 배경(필요성)

- 최근 정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사회문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얹혀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지해 정책을 만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 강화된 주민참여 관련 제도들을 민주적 도정운영과의 연계 속에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개정사항중 주민자치원리 강화(목적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명시), 주민의 권리로서의 참여권(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등에 참여할 권리) 참조

2.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2.0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중>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모델 마련, 읍·면·동-주민자치회-이·통장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능개편 추진 |

□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확대

- (거버넌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10→13개 시·도) 및 소통협력공간(6→8개소) 지속확대
 - *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략의제 등 추진
- (제도정착) 주민 주도 지역문제해결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제정 추진

○ 민선7기 경기 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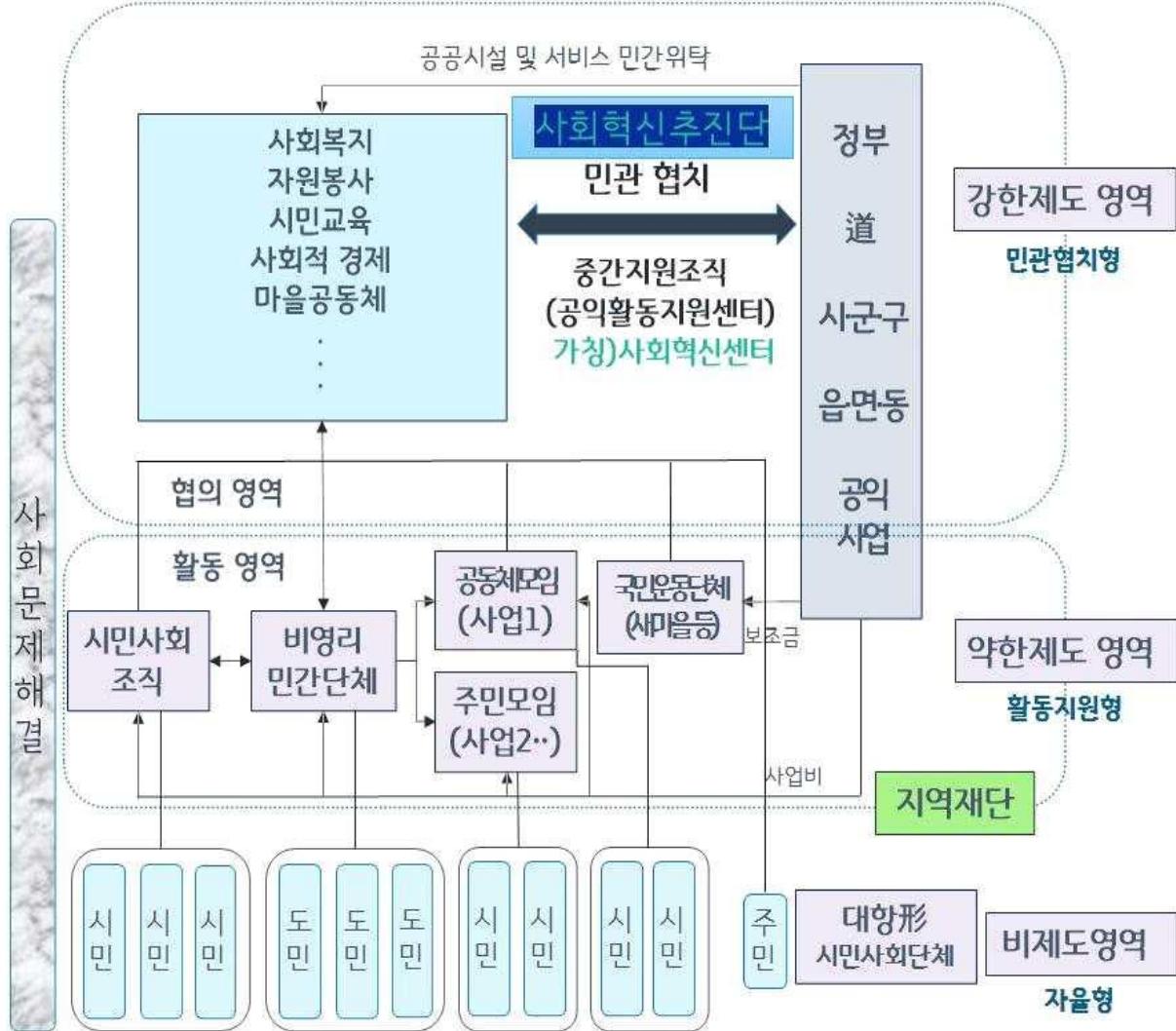
- 2019년 민관협치위원회 출범, 2020년 민관협치기본계획 추진, 공익활동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협치기반 조성

○ 정부혁신과 한계

- 도민(시민)참여제도 중 다수가 정책형성 및 의견수렴 수준에 편중되어 있음.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평가 단계에 대한 시민참여기반 조성 필요
- 시민참여기반 조성 위해 행정혁신이 필요하나 행정혁신의 범주가 정부 내부관리나 행정서비스효율성 제고에 국한되는 경향 존재, 정책문제 해결과정을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협력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혁신으로 확정될 필요
- 행정은 아직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료제적 구조·제도·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

3. 정책대안

□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 (행정 추진체계) 사회혁신추진단

- 기존 공무원조직과는 차별된 조직체계 구성

○ (중간지원조직) 사회혁신센터

- 다양한 리빙랩(생활실험)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 (재원)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재단

■ 평화/통일

정책과제명 경기도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외

1. 정책 제안 배경

- 2018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성명 그리고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교류협력에 큰 진전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2018년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과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이 다시 진행된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남북교류협력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규모도 제일 큰 경기도가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전국의 평화통일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상향평준화시키는 맡령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음.
- 6.15경기본부가 제안하고자 하는 평화통일정책은 보여주기식 큰 사업보다는 경기도민들의 평화통일의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작지만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안 정책의 방향

①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 모든 사업에 냉전의 반목과 대결의식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통일의식을 중심 원칙으로 확립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 관 주도의 통일사업이 아닌 민관의 협력 기구를 통한 평화통일 사업 추진
- 경기도 관내 통일기반 육성(물적, 인적, 제도적 토대 육성)
- 31개 시군 내에 평화통일 사업 전담 부서, 민관 협력 기구 마련 지원

③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운동 전개

④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교류협력(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추진

3. 정책대안

① 경기도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 성격 : 경기도의 평화통일 사업 전반을 기획, 총괄하는 민관 협력기구
- 구성 : 민, 관, 의회 동수, 집행기구(사무처) 마련
- 업무 : 경기도 통일기반 조성 사업 담당(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 경기도민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 지원
 - 경기도 관내 시민사회단체 통일사업 활성화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민간 단체 육성, 지원

② 경기도의 <경기통일교육기금 1천억원> 조성

- 방향 : 경기도민과 청소년의 평화통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평화통일교육 기금
- 지원 사업 : 경기도민과 청소년의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체험 사업, 학술사업, 문화행사 등에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내 시민단체
-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의 구분이 필요함

③ 남북 공동으로 일본 문화재 환수 운동 전개

- 2005년 북관대첩비의 사례처럼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범도민 참여 운동을 전개

④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사업 마련

○ <평화통일 과실수 나무심기>

- 어린 과실수 묘목을 대중의 성금으로 모아서 북녘 산하에 심는 사업

○ <임진각-개성 평화마라톤대회>

- 임진각과 개성을 왕복하는 평화마라톤대회를 추진

⑤ 가칭 <경기도 통일교육협의회> 구성

- 경기도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기도, 교육청, 민의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단체 육성, 지원(경기통일교육기금 관리)
-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⑥ 각 시군별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 각 시군별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마련 지원
- 각 시군별 평화통일사업 민관협력기구 마련 지원
-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⑦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요구

-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필요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과제명 경기도 교육청의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외

① 경기도 교육청의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 성격 :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 구성 : 민, 관, 의회 동수, 집행기구(사무처) 마련
- 역할 :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통일 사업 전반을 기획, 총괄하는 기구
- 업무 : 경기도 교육청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 경기도 교육청 학생, 교원의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② 평화통일 교육 확대

- 교원 자격 연수에 평화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 일급정교사 연수, 교감 연수, 교장 연수 등에 평화통일교육 의무 시간 배정
- 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 확대
 - 평화통일교육 시수 확대(기본수업, 연차시 수업, 자유학기제 평화통일수업)
 -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 확대

③ 남북 교원, 학생 교류사업 추진

- 남북 교사 교류 사업 추진
- 남북해외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
 - 남북, 해외 동포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남북해외 청소년 평화통일 한마당
 - 남북학생 퀴즈대회(주제-역사, 평화통일, 수학, 영어 등)

④ 금강산 관광 수학여행 경비 지원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남북의 만남을 활성화시킨다.

⑤ 북녘 친구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 전개

- 북의 학생들에게 문학, 기술 관련 책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초, 중, 고)

⑥ 평화통일교육 경기남부, 경기북부 체험관 건립

- 통일부 소속으로 연천에 있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의 공간 활용이 평화 상태이다. 경기도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

정책과제명 경기도 여성 중심의 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및 필요성

평화 안보는 국가 사무 또는 유엔연합사무로써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의 변화 유무에 따라 유동적인 정책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성별/세대/지역 등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평화사업=안보사업’이라는 인식은 ‘여성=보호 받는 자, 남성=보호 하는 자’라는 젠더 위계를 만들었고 성차별주의를 유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가부장성 강화를 야기해왔음. 평화안보사업에서 지역 여성의 경험과 삶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함. 70여년을 평화 안보 이슈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의 삶에 초점을 둠겨놓아야 함.

군 조직의 성격상 폐쇄된 공간과 강력한 위계 구조 하에서 군대 내 성폭력의 문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및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음. 경기도는

dmz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군 조직 내 양성평등 담당관을 두어 피해자 상담을 하고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나 적극적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수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담당관 역량에 따라 외부 성폭력전담기관과의 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소극적 대응에 머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성인지 관점의 담당관 배치와 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의 지원 등이 필요함

2. 정책대안

- ① 미군 위안부 문제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 실효적 조치 마련
- ② 탈 북민 여성을 위한 심리치료 자립 기반 지원 확대 및 관련 경기도 특화사업 확대
- ③ 경기도 평화안보사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개선안 반영
- ④ 남북여성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아시아 여성평화심포지엄 정례화
- ⑤ 경기도 주둔 군 조직 내 민관협의체 방식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 문화

정책과제명 문화 협치 플랫폼[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구축

1. 배경(필요성)

-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협치 플랫폼이 상설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몇 개의 문화조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흥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이 존재하지만, 경기도의 문화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협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음.
- 공무원의 보직변경에 따라 기존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않아 문화정책에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임.

3. 정책대안

1) 문화협치 플랫폼 -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구축

- 문화정책인, 기획자, 예술인, 주민, 문화행정의 결합으로 문화협치플랫폼 구축
- 5년마다 계획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집행대책 마련, 모니터링
- 경기도 주요 문화정책 및 사업 평가
- 새로운 문화정책 및 사업 수립



정책과제명 예술인 기본소득

1. 배경(필요성)

-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도민들의 일상 속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예술하는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예술인들이 요청해왔고, 2021년 7월 ‘경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로 첫 성과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확히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로 승격시켜 경기도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 소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으로 되는 사람이 86.6%(2021년)으로 조사되었다. 예술인 전체 연평균 소득은 755만 원으로 3년 전(1,281만 원)보다 526만 원(41%) 감소.
- 생계가 어려워서, 연습실 임대료를 못 내서 예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은 도민들을 위해서나 예술인들을 위해서나 필수적인 정책임

3. 정책대안

- 1)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
- 2) 경기도 문화예산 3% 확보

정책과제명 문화예산 3% 확보

1. 배경(필요성)

-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관계맺음과 생활문화,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예술향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산 3% 확보는 필수임.
-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색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문화분야 예산을 늘리고, 문화분야 사업을 키워야 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이 정책은 무척 중요한 내용임. 그럼에도, 문화분야 예산은 매

번 뒷전으로 내팽겨쳐지는 현실은 획기적인 정책사고적 전환이 필요한 문제임.

2.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산 3% 정책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정부 스스로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했음에도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문화예산은 2%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임.

3. 정책대안

1) 경기도 문화예산 3% 확보

- 문화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을 여력이 되면 하는 영역으로 사고하지 말고 필수 영역으로 사고해야 함

■ 기후위기

정책과제명 탄소 중립을 위한 폐기물 자원순환 에너지화 정책

1. 배경(필요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음.

2015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부터 모든 국가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정하였고 이에 지자체도 이를 위해 기존 목표를 상향 조치해야 하는 상황임.

그리고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결정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인 지자체에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경기도는 다이옥신 독성물질 발생과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은 소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구에 그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의 실질화가 필요함.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 폐기물을 자원순환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인구는 13,574,369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51,625,561명의 26%로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음.(통계청, 2022년 2월 기준)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9%로 전국 1위인 경기도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3.2%(전국 평균 2.0%)에 이르고 있음.(경기연구원, 2022.01)

경기도의 가정, 상가, 기업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 8.5%에 상당히 모자라는 3.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경기연구원, 2022.01). 2020년 기준 경기도 에너지소비량은 19,411,964toe로 국내 총 에너지소비량 154,943,952toe의 12.5%에 달하고 있음.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C』에 ‘인간 활동은 0.8°C에서 1.2°C 범위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0°C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C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인간 활동에 기인한 전 지구적 CO₂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경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였음.

2020년 6월 전국 228개 지자체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동년 9월 국회 ‘기후위기 선언’, 동년 10월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대통령연설 그리고 2021년 5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 참여)의 ‘2050 탄소중립달성 선언식’이 있었음.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소인프라 구축을 정부는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런 와중에 불법폐기물 문제와 폐플라스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었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발생량 497,238톤/일이고 경기도는 95,729톤/일(1일당 생활계폐기물 13,197톤, 배출시설계폐기물 26,188톤, 건설폐기물 52,916톤, 지정폐기물 3,428톤)으로 전국 대비 19.3%에 이룸. 현재 경기, 서울, 인천은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 하지만,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도 반입량의 15%에 해당하는 소각재가 발생함. 그리고 맹독성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소각장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임.

이는 1900년대 말 만들어진 재활용, 소각, 매립이라는 폐기물 처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자원순환사회,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

그리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률이 매우 높게 수치화되어 있으나 이는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불법방치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업체의 연료 및 원료도 공급되는 것 또한 ‘쓰레기시멘트’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자원순환과 에너지 그리고 탄소중립을 고민하고 있는 ‘Zero Waste Europe’(EU국가에 있는 ‘지역 폐기물제로 그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만듦)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각은 1톤을 처리하면서 1.1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기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문제를 야기하며 소각에 있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집약적이다’라고 하며 이에 EU는 소각 기반의 폐기물에너지화를 방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 환경,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음.

3. 정책대안

1) ‘쓰레기는 자원&에너지’ 통합정책 추진

폐기물정책, 재생에너지정책, 탄소중립정책의 통합정책으로 가야 함. 유기성(플라스틱, 비닐, 합성고무, 합성섬유, 음식물, 분뇨, 하수슬러지) 폐기물과 무기성 폐기물로 대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해야 함.

이러한 에너지화에 있어서 독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소각방식을 지양하고 열분해유화장치, 열가수분해장치 등으로 물질을 분해하여 재생에너지(재생유, 재생가스, 재생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처리시설을 보급하여야 함. 이를 통하여 입지선정에 있어 민원을 제로화하고 입지를 최소화하고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분산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함.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없애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에너지대체 등을 정착시켜야 함.

2)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

통합정책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자원순환업무, 에너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국이나 과)가 설치되어야 함.

3) 탄소중립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폐기물처리는 발생하는 기초 지자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광역합의를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폐수지류(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고무 등) 유화장치, 유기성슬러지(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가수분해장치 그리고 이의 통합처리가 가능한 열분해장치 등을 지역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과제명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배경 현황 및 문제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지구온도 상승 1.5°C 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고,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다.⁸⁾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수도권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인 목표와 국가적 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재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30년 영통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맞추어 생산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로 보충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예산의 투여가 필요하다.

<정책대안>

○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경제 구조 개편

첫째 재생에너지 사업의 빠른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에 발전시설 담보 대출이 가능한 금융 상품 개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8) 법률신문 2021.11.03

한 높아지는 금리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실행해야 할 것이다.

* 충청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용자 이자 차액 지원 1KW당 150원씩, 최대 3억원 용자 한도,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 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⁹⁾

둘째, SMP의 등락에 따른 불안한 가격 구조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 가격보장이 필수적인데, 경기형FIT 제도를 실행하여 소규모,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형 FIT제도와 더불어 서울형FIT제도처럼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를 추가 지원한다면 안정된 가격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 한국형FIT는 일반사업자는 30KW, 농어민이나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해주는 제도

* 현재 서울형FIT는 1KW당 100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 녹색금융 활성화
- 재생에너지 설치 용자금 이자 차액 지원제도
- 경기형FIT제도 도입

○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함으로서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높힘과 동시에 도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 도민들이 베란다 태양광이나 주택태양광을 가정에 직접 설치하거나 태양광발전에 출자(투자)함으로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궁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 빠르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 곳곳에 있는 유휴 부지 활용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경기도 내 공공부지(공공건물, 주차장, 자전거도로, 학교등)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 지역, 학교, 아파트 단위 공동체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 베란다태양광, 주택태양광 지원 예산 확대
- 시민참여 햇빛발전협동조합 양성

9) 충북일보 2022.03..23.

1. 배경 및 필요성

재난관리와 관련해 성별분리 통계를 시작하는 것부터 관련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행동요령’에 성별·재난 취약자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내용은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재난 취약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반한 자에 대한 행동요령 개발과 보급. 재난 약자인 영 유아와 아동, 1인 가구 여성, 돌봄 여성, 여성 일반, 임산부, 고령여성에 대한 생애맞춤형 안전 매뉴얼 마련. <지하철 사고, 지진, 화재, 붕괴, 풍수해>등 재난별 가이드 북 마련 안전교육 실시¹⁰⁾ 등이 필요함

경기도 긴급재난정책 선호도 조사 등이 매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조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례보강이 필요.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이 재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극명함. 이에 대해 경기도 재난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지원과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원 지원 강화 등 적극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해야 함.

2. 정책대안

- ① 기후위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 대표성 확보 의무화, 해당 이행율 통계발표
- ②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체계구축
- ③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률, 정신질환 유발율 : 성별, 연령별 통계 모니터링 및 지원
- ④ 각 지역별 재난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대해 성인지관점의 모니터링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확대

10) 대구여성회의 민선7기 의제 안 중 내용 가져옴.

■ 교육

정책과제명 2022 경기교육정책 제안

슬로건	<p>기본에 충실한 교육! 함께 책임지는 평등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4대 과제 19개 의제></p> <p>교육기본권보장 4개 의제 / 교육복지 확대 3개 의제 교육자치 확립 4개 의제 / 미래교육 대비 6개 의제</p>
	교육 기본권 보장
정책대안	<p>최근 교육격차의 문제, 경쟁사회의 심화,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등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양극화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지음을 증명한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에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교육 수준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p> <p>이에 영·유아부터 18세까지 교육을 국가와 사회, 지역이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p> <p>1. 영·유아부터 18세까지 책임교육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아교육, 보육 통합-0세~18세까지 의무교육, 국가 책임 보장-청소년 성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운영(유초중고 연계교육) <p>2.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 <p>3.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로 하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생의 교육정책 선택의 권리 보장 <p>4.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아 15명 이하, 초중고 20명 이하로 학습권과 보호권 보장

교육 복지 확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된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공교육의 책임 강화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1. 안정적 돌봄 시스템 구축

-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 시스템 공백 개선.
- 0세부터 18세까지의 사회적인 돌봄과 보호 시스템 운영

2. 교육격차 해소

1) 기초학력 격차 해소

- 교육소외계층에 사교육 대체 교육서비스 제공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 다문화 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배치 및 도우미 강사 쳐우개선
-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2) 교육시설 격차 해소

- 학교시설 현대화
- 학교 공간 재구조화
- 개선 시 안전 매뉴얼 운영 강화

3) 진로 및 예체능 문화교육 확대

- 교육환경 열악한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 예체능 문화 교육 기회 확대

3. 친환경 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 다양화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 학교 급식 다양화로 급식 선택권 보장
- 채식급식 확대로 학생건강 증진 및 환경을 지키는 식생활교육 생활화

교육 자치 확립

교육 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참여의 보장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치 확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1.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치조례 현실화

-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시간 및 재정 확보
- 경기 학부모 조례 개정
- 교육자치조례 현실화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 인원, 소통채널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개설
- 학생회, 학부모회 지월체계 구축 및 확대 운영

3.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30% 이상 보장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

4. 학부모교육 의무화

- 교육과정, 정책 문해력 관련 학부모 교육 의무화
- 학부모교육 참여 시 직장인 학부모 유급휴가 보장

미래교육 대비

1. 특권학교 폐지, 고교평준화 확대

-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경기 내 전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등교육 실현
- 교육과정 다양화 보장

2.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중 의무화 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체계화(삶에 기반한 교육)
-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식생활교육, 게임 중독 예방교육 등 삶에 기반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학부모, 지역의 참여 보장

3. 사립교육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사립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경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

4. 교원 양성과정 개편 및 직무적합성 제고

- 교원 양성 과정에 현장 수련 기간 연장(6개월 이상)
- 인턴교사제 도입
- 교원 양성 과정에 인성 검증 강화 -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상담시설 현장 수련 시 가산점 부여
- 성 사안 등 중대 범죄 교사의 교직 복귀 불가
-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실화

5.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강화
-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6. 인권친환적 학교문화 조성

- 징벌적 학폭법을 관계 회복적으로 전환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 대책 수립
-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위원회’로 개정

(1) 제안배경

“인간에 대한 존중감”은 성평등감수성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연령, 장애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평등 감수성이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 및 성폭력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든 폭력의 근원은 성평등감수성 부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은 학교내 학생들 안전과 바로 연결이 된다. 학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학생들간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이 가장 우선적이다. 성평등감수성이 부족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학교내 성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교사의 성평등감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며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의 바로미터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도 초, 중, 고 교사들이 일년에 받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4대 폭력교육으로 대체하거나 1~2시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감수성 교육은 일년에 1~2시간 받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학교교사들은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적이고 성별고정관념이 완고한 양육환경에서 양육되고 교육받고 자랐다. 그런 교사가 일년에 1~2시간 성평등교육으로 성평등감수성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또한 성평등감수성교육은 자신의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통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년에 1~2시간으로 성평등감수성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들과 달리 이미 의식이 완고하게 형성된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교과목개설에 한하지 말고 교원자격에 포함시켜 임용과정에서 실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나 먼저 경기도에서 교사대상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학교교사들이 성평등감수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성평등감수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일년에 1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3) 정책대안

1)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사의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한 성평등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교사가 성평등감수성이 향상되면 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존중감도 향상되고 모든 폭력은 감소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10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성평등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성평등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성평등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안에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성평등초등교사연구회” 아웃박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과목 및 학교 생활 속에서 성평등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교사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중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성평등교사에게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모범적인 모델로 더 많은 교사들이 성평등한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안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성평등연구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와 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과목을 성평등한 교수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평등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한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성평등전담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성평등교육을 10시간이상 전담하고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담할수 있는 성평등전담교사를 양성하고 배치 해야 한다

정책과제명 **돈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가는 경기도**

1. 배경

- 지난 10여년동안 진보진영의 요구였던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학교교육시간에 학생들이 돈을 못 내서 걱정할 일은 줄어들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누구나 차별없이 모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 경기지역화폐의 확대되었으며, 아동 과일 지원, 교육회복지원금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음.
-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징수되는 여러 비용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음.(지역화폐 사용 불가)

2. 현황 및 문제점

- 학년별로 1년에 2-3회 정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나 체험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원은 사설업체의 선의로 학급별 면제 1명 정도만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에게 가정 경제 상황 등이 노출될까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밖 청소년들은 교육과정 내 여러 체험활동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지원 방안을 고려하면서 늘 함께 고려해야하나, 누락되는 때가 많음.

3. 정책대안

- 1) 교육과정 내 현장체험학습비(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전액 지원
 - 교육복지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지급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도록 설계
- 2) 학교밖 청소년 여행 바우처 지급